

제 27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1.17.)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혁신산업담당관]	1
2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혁신산업담당관]	6
3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행복나눔과]	12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재화,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2. 제안이유

- 거창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안 제4조)

라. 표지판의 설치기준(안 제5조)

마. 지원표시의 설치기준(안 제6조)

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안 제7조)

사. 철거(안 제8조)

아. 비용부담(안 제9조)

자.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본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6. ~ 01. 0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해 군민들이 보조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지원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 ·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 9.

2. 제안이유

- 다자녀 기준 완화,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안 제1조~제9조)
 - 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 2) 18세, 19세, 24세, 25세 자녀 기준 ⇒ 24세 자녀로 통일
 - (가) 24세 근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 (나) 의미: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
- 나. 만 나이 표현 정비(안 제9조~제12조)

- 1) 나이 표현에서 “만” 삭제
 - 2) 근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 다. 행정안전부 권고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안 제13조)
- 1)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를 받은 날**
 - 2)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 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경쟁제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 1) 지역건설 자재·기계·근로자의 “우선” 사용·고용 규정에서
“우선” 삭제
 - 2) “관급자재로 공급”과 유사한 의미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12. ~ 2024. 1.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올 2월에 발표될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봄.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시책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 또한, 지난해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시행으로 만 나이 표시방식이 통일되어 나이 표현에서 ‘만’을 삭제 함.
- 덧붙여,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및 경쟁제한 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1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개정 2023. 7. 18.>

5.~8.(생략)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생략~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다. 다자녀 가구	1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 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020.5.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21.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8.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제한 유형	조례명	현행조문	개선방안
사업자 차별	거창군 건설산업 활성화 진 조례	<p>제3조(군수의 책무) ⑥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p>	<p>삭제 -관급자재로 공급 (군 발주 공사~) -우선</p>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2. 제안이유

-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사. 대장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 ~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거창군의 입양아동수는 2021년 38명, 2022년 35명, 지난해는 28명으로 2021년 대비 26.3%가 감소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입양아동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경상남도 기준 2021년 1,036명, 2022년 951명, 2023년 868명

- 이에,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 후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